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8월 10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10일

3. 제안이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나.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 신청
은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하고(안 제7조)

판매인 명의 및 판매소 위치변경, 판매 폐지 신고, 승계신청은 10일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5일전까지 하도록 완화하였으며(안 제11조)

판매인 결격요건(안 제8조), 인감계 제출(안 제9조), 표찰게시 의무(안 제10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폐지, 또는 완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